

예 산 총 칙

2020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0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1,145,312,510	34,359,375
일반회계	1,005,772,182	30,173,165
특별회계	139,540,328	4,186,210
공기업특별회계	114,779,147	3,443,374
상수도사업특별회계	33,550,781	1,006,523
하수도사업특별회계	81,228,366	2,436,851
기타특별회계	24,761,181	742,83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989,438	59,683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4,417,256	132,518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516,545	15,496
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	10,761,526	322,846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5,982,529	179,476
지하수특별회계	1,093,887	32,81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085,249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3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